

# 예 산 총 칙

2017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26,746,190	18,802,386
일반회계	535,266,982	16,058,009
특별회계	91,479,208	2,744,376
공기업특별회계	78,543,997	2,356,320
공영개발특별회계	19,137,408	574,12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987,763	629,63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8,418,826	1,152,565
기타특별회계	12,935,211	388,056
의료급여특별회계	318,666	9,560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05,995	6,180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3,629,430	108,883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2,043,130	61,294
주차장운영특별회계	1,738,948	52,168
수질개선특별회계	4,504,980	135,149
기반시설특별회계	322	1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04,362	3,131
지하수관리특별회계	389,378	11,681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0,266,046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9,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8 조 (자원구분) 의존재원에 대한 약어를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국고보조금(국), 지역발전특별회계(지), 기금(기), 도비보조금(도), 특별교부세사업(특), 시군조정교부금등(조)

제 9 조 금회 추경 후 12월 31일까지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보조사업과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은 예산승인(명시이월, 계속비이월 포함)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